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8489

제안연월일: 2025. 2.

제 안 자 :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연 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1	2202087	박균택의원 등 11인	2024. 7. 22.	상정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4.9.23.)	
				소위 심사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2.24.)	
2	2202837	김주영의원 등 10인	2024. 8. 14.	상정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9차 전체회의(2024.12.6.)	
				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2.24.)	
3	2204382	장동혁의원 등 10인	2024. 9. 26.	상정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1.10.)	
				소위 심사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2.24.)	
4	2205171	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 11. 1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 (2025.2.20.)	
				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2.24.)	

가.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2.24.)는 이상

4건의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나.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5.2.26.)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결과를 받아들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마약진통제·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경찰관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형사벌칙 등 강력한 제재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마약류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한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제9호의2 및 제6조제7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제6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5조제9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같은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대마재배자는 제외한다)에 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이경우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
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	법경찰관리)
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	
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	
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	
•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	
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	
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9의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
	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0. ~ 53. (생 략)	10. ~ 53. (현행과 같음)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	
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 ~ 7. (생 략) <신 설> _____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5조제9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역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
조제5호에 따른 마약류취급자
(같은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대마재배자는 제외한다)에 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8. ~ 50. (생략)

8. ~ 50. (현행과 같음)